

고용유지(휴업)지원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2. 7. 21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



1. 건 명: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 (대표자명)	사업장관리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지원금액	회수금액	회수사유		
코리아드라이브 (김0근)	129-18-933**-0	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25,644,600원	181,010원	고용보험 피보험요건 미충족	이사감	경기 성남시 분당구

4. 공고기간: 2022. 7. 21.~2022. 8. 4.(15일간)
5.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+센터 박민주(☎ 02-2639-226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